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FOUR
『포용적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융합·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제정 2020. 03. 08.
개정 2021. 08. 18.
개정 2023. 02. 15.
개정 2024. 04. 30.
개정 2025. 12.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FOUR “포용적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융합·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BK21FOUR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행정대학원 교수들 가운데 다음 인사들로 구성된다.
 - 1. 행정대학원 BK21FOUR 사업단장·부단장
 - 2. 행정대학원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 3. 그 밖에 행정대학원 원장과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교원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참여교수단 심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논의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2. 사업단의 예산심의 및 결산
 - 3.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단 연구센터)

- ① 사업단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센터는 포용적 거버넌스의 이론적·학문적 개념 연구, 국내외 공동 융합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진연구인력)

- ①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을 뜻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총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명시된 신진연구인력의 외부 활동을 허용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사업단 관련 학술활동 조직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성과(단행본 등)를 연 1편 이상 게재할 의무
- 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에 필요한 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금. 단 논문 투고자와 학술대회 발표자에 한한다.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와 국제학술대회 원고 작성 시 교정 및 게재에 필요한 지원금. 단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

제5조(사무조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전담인력을 두도록 한다.

제6조(참여대학원생)

-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행정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는 행정대학원의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또는 글로벌행정전공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 ② 학위과정 수료자는 입학 4학기 이내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 8학기 이내 박사과정생 중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BK21FOUR 사업 관련 연구지원금(장학금, 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 등)을 소정의 석사과정 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자격
 2. 사업단 참여교수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권리
 3.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에 필요한 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금. 단 논문 투고자와 학술대회 발표자에 한한다.
 4.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와 국제학술대회 원고 작성 시 교정 및 게재에 필요한 지원금. 단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
- ④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매학기별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
 2. 사업단 규정과 참여교수단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3.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

4. 취업, 휴학 등 참여대학원생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의무
5. 취업 현황 조사에 협력할 의무

제7조(지원대학원생)

-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석사과정생은 매월 100만 원 이상, 박사과정생은 매월 160만 원 이상, 박사수료생은 매월 130만 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를 위해 아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사업단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2.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제학술지(SSCI 또는 SCOPUS 등급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에 논문을 게재할 의무
 3.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사업단 자체 세미나에서 발표할 의무

제8조(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 ① 참여교수는 매년, 참여대학원생은 매학기 선발한다.
- ② 참여교수 선발은 [참여교수 선발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 기준](별첨 1)에 근거하여 매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참여교수는 전체 사업단 소속 교수의 70% 이상으로 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2개 학기 동안 「한국연구재단 논문환산편수 산출기준」(참고)에 따라 40% 이상의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단 그 다음 학기부터 재진입이 가능하다.
- ④ 사업단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학교 본부의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학기의 참여대학원생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9조(국제화경비 지원)

- ① 국제화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장기해외연수, 단기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학자 초빙 등의 항목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② 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장·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연수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한하여 연간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3.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는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목적의 연수를 지향한다.
 4. 장·단기 해외연수 선발은 운영위원회가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연수계획서는 사업단이 공지하는 지정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해외연수 완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연수 완료 한 달 내로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항공권과 항공권 구입 영수증(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기타 연수과정에서 사용한 증빙 영수

증, 해외연수 증빙자료(사진 등) 1종 이상을 함께 제출한다.

6. 참여대학원생은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1년 이내에 관련 내용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7. 신진연구인력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④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기준을 준수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국제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학술대회 참가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참가계획서는 학술대회명과 일시 및 장소, 발표 주제, 초록 등을 포함한 소정의 양식을 갖춘다.

3.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는 수시 접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술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발표자 당사자에 한하며 연간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과 공동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⑤ 해외석학 초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석학 초청은 되도록 본 사업단의 주제와 부합되도록 한다.

2. 특강비 지급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및 「행정대학원 강연비 기준」과 이에 근거한 BK 자체 지급기준에 따른다.

3. 해외석학의 체재기간은 활용내역에 따라서 계상한다.

제10조(강연료)

국내 학자 초청강연의 경우 강사료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및 「행정대학원 강연비 기준」과 이에 근거한 BK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강사의 저명도와 강의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생성형 AI도구 사용의 지원)

BK사업단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인력에 대해 자체기준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경쟁체제)

①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실적을 반영하여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라 참여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학생 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연구실적 및 학술대회 발표, 사업단 활동 등을 평가하여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별첨 3)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사업단 연구활동 참여 정도,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행정전담인력의 사업단 업무수행 활동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및 포상)

- ① 참여대학원생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 1. 사업단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사업단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 3. 사업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②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1. 지원대학원생 자격 박탈: 결정 이후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지원 취소
 - 2. 연구장학금 환수: 당해 학기 관련 기지급된 연구장학금 환수
- ③ 징계가 결정된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2주일 내에 운영위원회가 재심한다.
- ④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사업단 자체 실시 행사에서 일회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와 포상금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첨 1) [참여교수 선발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 기준]

- ① 참여교수는 매년 2월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논문환산편수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논문과 저서의 환산편수) 순위 및 BK 사업단 보직교수 참여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참여교수에 대한 BK 지원대학원생 배정은 연구실적 순위에 근거하여 1위 3명, 중위수 이상 2명, 나머지는 1명을 배정한다. 단, BK 사업단 보직교수의 연구실적 순위가 중위수 미만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③ 참여교수 선발 및 BK 지원대학원생 배정은 교수 및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성과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BK 지원대학원생을 2명까지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별첨 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

- ①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매년 2월과 8월에 그 전 6개월 동안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논문환산편수 산출기준」에 따라 100만원*논문환산편수(가중치 제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논문 및 외국어 학술저서에 대하여는 200만원*논문환산편수에 해당하는 성과급
 2. 국어 학술저서에 대하여는 100만원*논문환산편수에 해당하는 성과급
 3. 학술대회 발표 및 기타 사업단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 ② 참여대학원생 중 근로장학생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 상황 및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성과급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첨 4) [BK21장학금 외 기타과제 참여 및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기준]

BK21장학금 외 기타과제의 참여 및 타 장학금의 중복수혜에 관한 사항은 행정대학원 장학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참고) 「한국연구재단 논문환산편수 산출기준」

주저자 표기가 있는 경우 (저널논문)	주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저널논문 및 학술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저자 1인의 논문환산편수 = $P * [\min(1/(m+0.5), 0.5)]$ ▶ 기타저자 1인의 논문환산편수 ($n > 0$) = $P * [\{1 - m * \min(1/(m+0.5), 0.5)\}/n]$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n) - P: 저널별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1인의 논문환산편수 = P/T - T: 총 저자 수 - P: 저널별 가중치
<p>▶ 저널, 학술저서별 가중치(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P=1$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P=3$ - 기타국제학술지: $P=1$ - 학술저서(국어): $P=3$ (개정판일 경우: 0.9) - 학술저서(외국어): $P=5$ (개정판일 경우: 1.5) 	

“논문환산편수(가중치 제외)에 대한 예시”

주저자 수(m)	기타저자 수(n)	주저자 1명의 논문환산편수 $\min\{1/(m+0.5), 0.5\}$	기타저자 1명의 논문환산편수 $(1 - 주저자총점수)/n$	전체 저자 논문환산편수 합
1	0	1.00	0	1
1	1	0.50	0.50	1
1	2	0.50	0.25	1
1	3	0.50	0.17(1/6)	1
2	0	0.50	0.00	1
2	1	0.40	0.20	1
2	2	0.40	0.10	1
2	3	0.40	0.07(1/15)	1
2	4	0.40	0.05	1
3	0	0.33	0	1
3	1	0.29	0.14(1/7)	1
3	2	0.29	0.07(1/21)	1
3	3	0.29	0.05(1/28)	1
3	4	0.29	0.04	1
4	0	0.25	0.00	1
4	1	0.22	0.11(1/9)	1
4	2	0.22	0.06(1/18)	1
4	3	0.22	0.04(1/27)	1